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4670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4670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 선고 2017나9086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16 선고 2017가소260409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A

피고, 피상고인B

판결 선고 2019. 4. 11.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 선고 2017나9086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이유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소액사건이므로 그 법 제3조에 규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위 규정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김상환

대법관박상옥

주심대법관안철상

대법관노정희